

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제도 비교자료

구분		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	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
신청대상	대상	·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(대학원, 학점은행제 교육기관, 외국대학 제외)	·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(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)
	연령	· 만 35세 이하 (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)	· 만 55세 이하 (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)
	성적기준	· 신입생 : 제한 없음 · 재학생 :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 학점(또는 12학점 이수), 성적 70/100(C학점) 이상 -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(70/100점(C학점) 이상시 대출 가능)	· 신입생 : 제한 없음 · 재학생 :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 학점(또는 12학점 이수), 성적 70/100(C학점) 이상 -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(70/100점(C학점) 이상시 대출 가능)
	소득기준	· 소득 8분위(구간) 이내 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(구간) 제한없음	· 소득분위(구간) 제한없음
	신용요건	· 제한없음 (금융채무불이행자, 저신용자 가능)	·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
대출금리	· 변동금리(연 2.20%)	· 고정금리(연 2.20%)	
대출조건	· 등록금 : 소요액 전액(한도 없음) · 생활비 : 연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	· 등록금 : 소요액 전액(한도 있음) ※ 대출금액 총한도 · 대학(전문대학 포함) : 4천만원 · 5, 6년제 대학원 및 일반, 특수대학원 : 6천만원 · 의/치의/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: 9천만원 · 생활비 : 연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	
대출기간	·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('18년 기준 연소득 2,013만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·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(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)	· 최장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	
상환방법	· 의무적 상환: 소득에 따라 상환(국세청) · 자발적 상환: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(재단) (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)	·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월 분할상환 방식) ※ 중도상환 가능(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)	